

「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」 폐지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5년 6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03 호

## 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폐지내규

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기 획 실
입 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안 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자 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용 석 ( 3 8 0 - 5 8 2 3 )

## 관계법령

### 군포시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군포시 공공기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**군포시, 군포시 공기업 및 군포시 출자·출연 기관**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, 그 용역 결과를 평가·공개함으로써 용역과제의 활용도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**제3조(적용범위)**

- ① 이 조례는 시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.
1. 모든 학술용역
  2.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또는 공사설계용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
  2. 전액 국비(국가 기금 포함)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
  3.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